

학교 밖 아동 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 및 지원 안내 자료

1. 지원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 '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 아님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 '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 '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 '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최초 시작일 기준(9.28.))

2. 신청 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 자격: '학교 밖 아동' 의 보호자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 2020. 11. 3.(화)~ 11. 13.(금) <9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업무시간<9~18시, 점심시간(12시~13시)제외>에 접수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주소	관할 자치구	연락처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전농로 168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82	2210-1286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대현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5607	390-5594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2165-0159	2165-0374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 노해로 313(창동)	도봉구, 노원구	02-3499-6879	3499-6859
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대학로 10(효제동255-22)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708-6626	708-662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잠실로26(잠실동)	강동구, 송파구	02-3434-4395	3434-443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구 월정로269(신월동)	강서구, 양천구	02-2600-0945~6	2600-095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선릉로116길 45(삼성2동 28)	강남구, 서초구	02-3015-3439	3015-3519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상도2동)	관악구, 동작구	02-810-8336	810-8332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고산자로280(행당동)	성동구, 광진구	02-2286-3789	2286-379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솔매로50길 65	성북구, 강북구	02-9449-377	9449-489

○ 필수 제출서류 : ❶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붙임1], ❷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❸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전체 표시), ❹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①「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붙임2],
②보호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부득이 하게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 제출** 할 것(인감증명서로 증명되지 않는 도장으로 신청서 작성 불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등을 제출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지급예정일 : 2020. 11. 27.(금) ~ 11. 30.(월)

* 신청 시기, 서류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붙임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부

2.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1부. 끝.

<유의 사항>	확인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input type="checkbox"/>
<p>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input type="checkbox"/>
<p>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초등학생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p>	<input type="checkbox"/>
<p>4.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input type="checkbox"/>
<p>5.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